분쟁광물(책임광물)정책

(Conflict Minerals Policy(Responsible Minerals) Policy)

㈜한신기전

분쟁광물(책임광물)정책

▶ 목 적

(주)한신기전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고 책임있는 원재료 소싱에 적극 동참 하고자 합니다. OECD 실사가이드, EU 분쟁광물규정, 美 도드-프랭크법 등 국제규범에 준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원재료 조달 과정에서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을 예방하고 사 회·환경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해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대상 광물

1. 분쟁광물

아프리카 10개국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을 포함한 분쟁지역에서 인권 침해, 환경파괴 등 비윤리적으로 채굴되는 3TG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내 분쟁광물 포함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적법하고 윤리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을 제공한다는 기본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 주석(Tin : CAS NO. 7440-31-5)**

- 용도 : 납땜(솔더) 및 도금에 주로 사용되며, 대부분의 전자전기 제품 및 부품에 널리 사용

*** 탄탈륨(Tantalum : CAS NO. 7440-25-7)**

- 용도 : 전자제품, 자동차 및 항공 우주 제품에 적용되는 전기 부품과 정밀 합금 등에 사용

*** 텅스텐(Tungsten : CAS NO. 7440-33-7)**

- 용도 : 전구 필라멘트가 가장 대표적이며, 화합물이나 합금으로 널리 쓰임

*** 금(Gold : CAS NO. 7440-57-5)**

- 용도 : IT 및 반도체 부품, 의료용 기기, 도금, PCB 등에 널리 사용

2. 책임광물

분쟁광물 뿐만 아니라 콩고 민주공화국 코발트 채굴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 이슈가 제기되는 광물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코발트(Cobalt : CAS NO. 7440-48-4)**

- 용도 : 전기차, 휴대폰 등 리튬이온 배터리에 주로 사용

㈜한신기전

▶ 분쟁광물 정책

1. ㈜한신기전은 관리 대상 광물을 규제하는 국제 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립하고 사용금지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2. RMI에서 제공받은 관리 대상 광물 보고 양식을 활용하여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광물 제련소의 위치와 명칭을 파악할 것입니다.
3. 당사와 거래중인 협력사가 RMAP 인증 받은 제련소로부터 관리 대상 광물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4. 당사와 거래중인 협력사가 관리 대상 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RMAP 인증을 받은 제련소로부터 광물을 공급 받겠다는 서면을 요청할 것입니다.

▶ 분쟁광물 관리

▶ ㈜한신기전의 노력

㈜한신기전은 현재 불법 채굴 및 유통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의 분쟁광물과 코발트 등의 주요 책임광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책임있는 광물 구매에 대해 지속적 으로 조사 및 모니터링하고, 나아가 협력사의 거래처에도 분쟁광물 미사용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광물 구매 정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신기전

분쟁광물 사용금지 관련 서약서

(주)한신기전 (이하 "갑")에게 OOOO (이하 "을") 는 글로벌 분쟁광물의 소재/부품 미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제1조 목적

본 서약서는 을이 갑에게 부품공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부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을의 의무

을 또는 을의 임직원(이하 '을'이라 약칭함)은 하기의 의무를 이행하며 이를 준수한다.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부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을은 향후에도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부품을 사용 할 계획이 없다.

제3조 위반시 책임

을은 본 서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갑의 업무 및 경영에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의 불이익 조치와 민, 형사상 책임 등 법률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을의 서약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갑은 이하의 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민, 형사상 일체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년 월 일

" 을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서명)

㈜한신기전

▶ 부칙

본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은 2025년 4월 1일부로 재정하여 시행한다.